

질권 설정 계약서



2018년 월 일

채권자 겸 질권자 한국경우편당대부(주)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92, A동 7층(도화동, 효성해링턴스퀘어)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 【협동조합】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질권의 설정

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대부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 부분 “질권의 목적물인 예금 등의 목록”란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취득할 모든 권리와 법적 이익(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다음 내용으로 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 절차를 마쳤다

피담보채무의 표시:

| | |
|-------|---|
| 거래약정 | 2018년 7월 일자 대부거래약정서 |
| 금액 | 금삼억원 |
| 대출기간 | 취급 후 4개월 |
| 이자율 | 연 12.0% |
|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24.0%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2조 질권의 효력범위

1. 질권의 효력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예치된 예금과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예금계좌에 예치되는 예금, 적금, 이자, 만기 후 이자에 미친다.
2.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그 예금, 적금이 기간연장 또는 개서 계속된 경우나 병합, 분할, 증액, 감액, 이자율 가된 경우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그에 미친다.

제3조 위험부담·면책조항

1. 설정자는 채권자에 인도한 담보증서가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기로 한다.
2. 담보증서(통장)·담보물수령증(통장) 등의 증서상의 인명·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헌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를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4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1.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대부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다.

2.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3. 제1항, 제2항의 경우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대부거래기본약관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비용부담

채권자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설정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이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대부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설정자가 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6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 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제7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 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도 한다.

제8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채무 전체 변제 전 서울시 보조금입금계좌인 본 질권의 목적물인 계좌의 변경을 금지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당사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질권의 목적물인 예금 등의 목록

- 서울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입금통장 :
신한은행

